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1985호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8. 13.(화) ~ 2024. 8. 30.(금) (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강남구 선릉로 668(삼성동), ☎02-3423-6116)
- 개포2동주민센터 (강남구 개포로 511(개포동), ☎02-3423-7770)
-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강남구 개포로 516, 6단지 상가 2층 203호, 204호), ☎02-451-9955)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안) 관계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업명칭 :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개포로 516)
- 구역면적 : 116,682.30㎡(획지면적 : 103,316.60㎡)
- 시 행 자 :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윤형무)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0개월(예정)
- 건축계획 : 지하5층/지상35층, 공동주택(아파트) 21개동 2,6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198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의한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하였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고명칭: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4년 8월 9일 ~ 2024년 8월 23일(15일간)
※ 운행정지 등록(해제)일: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31일
3. 공고대상: 차량 7대 (차량내역 붙임 참조) [등록: 6대 / 해제: 1대]
4. 공시송달 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나.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동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라.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가능합니다.
5. 문의처 :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 02_3423_6495)

붙임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명단 1부.